

마포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

2021. 11. 30.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1. 11. 16.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21. 11. 17.
- 다. 상정일자 :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위원회(2021. 11. 30.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아동청년과장

가. 제안이유

마포청소년문화의집이 최초 민간위탁 이후 6년이 경과하고 재계약 기간이 도래하여 『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』 제5조 제2항에 근거하여 재계약에 대한 구의회 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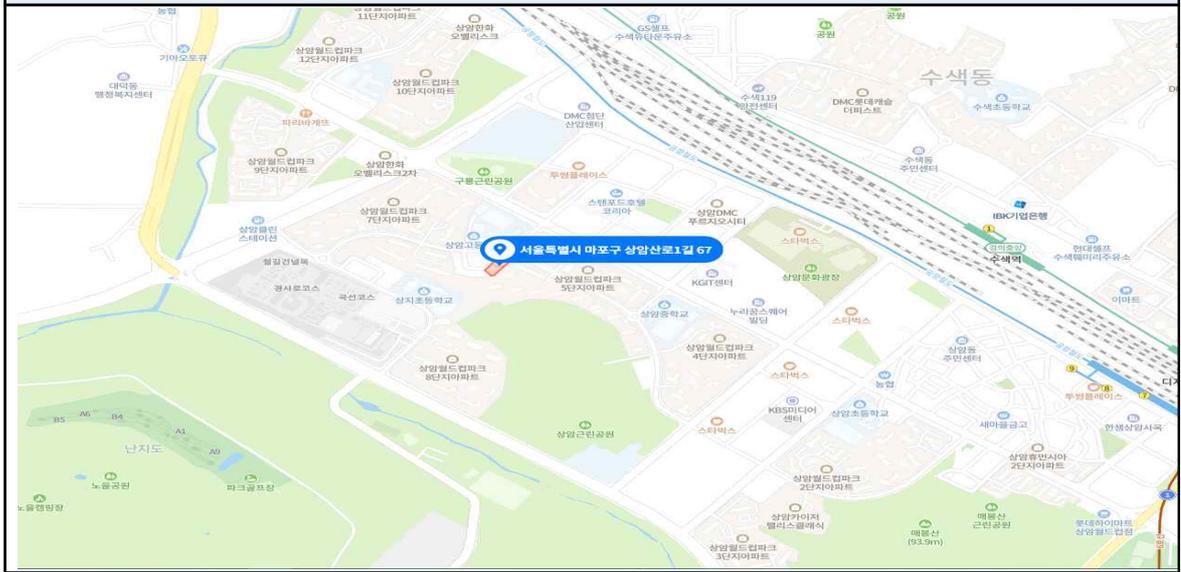
- 1) 위탁사무명 : 마포청소년문화의집 운영
- 2) 민간위탁(재계약) 내용
 - 위탁기간 : 3년(2022. 4. 1. ~ 2025. 3.31.)
 - ※ 최초 민간위탁일 : 2010년 2월 1일.
 - 수탁자 선정방식 : 재계약

- 위탁사무의 내용 및 범위 : 마포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

- 위탁시설 개요

위탁체	위탁기간	규 모	수용인원	운영사업
(사)한국청소년재단 (관장:박선숙)	2019.4.1. ~2022.3.31	대지 1,463㎡, 연면적 3,687㎡ (지하1~지상5층)	500명	청소년사업 상담사업 평생교육사업

위치도 (소재지: 상암산로 1길 67)



- 소요예산

(단위 : 천원)

연도별	사업비용	세부내역	산출근거
총사업비	3,665,000		
2022년	1,179,000	- 인건비 : 847,000 - 운영비 : 332,000	- 서울시 청소년시설 종사 인건비 가이드라인
2023년	1,221,000	- 인건비 : 889,000 - 운영비 : 332,000	
2024년	1,265,000	- 인건비 : 933,000 - 운영비 : 332,000	

3) 세부추진일정

- 민간위탁운영체 성과평가(여성가족부) : 2021.12.
- 민간위탁운영체 재계약 방침 수립 : 2022.1.
-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 및 협약 : 2022.1.~2.

3. 검토보고 (박춘주 전문위원)

- 본 마포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사무는 『청소년활동진흥법』 제16조 및 『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』 제8조에 근거하여 2010년 2월 1일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사무로
- 민간위탁 행정사무의 내실있는 추진과 관리를 위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『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』 제5조제2항에 의거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, 사무의 위탁기간이 6년 경과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계약(재위탁) 사무에 대하여 구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임.
 - 참고로 본 재계약 동의안은 『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』 제5조제2항이 시행되는 2022년 1월1일 이후에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나 사무의 재계약 관련 절차 이행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여 부득이 금번 회기에 제출됨.
- 따라서, 본 재계약 동의안은 『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』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동의안이며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는 바, 동 사무의 재계약에 대해서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람.

※ 참고 자료 : 관련법규

[관련법규]

< 청소년활동진흥법 >

제16조(수련시설 운영의 위탁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,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·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(이하 “위탁운영단체”라 한다)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 <전문개정 2014. 1. 21.>

<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>

제8조(운영의 위탁)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「청소년기본법」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20.12.31.>

<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>

제21조(성과평가)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외부기관의 성과평가를 받는 경우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.
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- 5. 토론요지 : 없음
- 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- 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- 8. 기타 : 없음